##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신영대·박희승·조 국

한병도 · 김현정 · 김성회

윤준병 · 김용만 · 정을호

김윤덕 • 민형배 • 염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 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제14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승)
<u>&lt;신 설&gt;</u>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
	<u>면 아니 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생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
	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
	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